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(고시) 제정 알림

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-527 (2014.1.10.)

2. 위와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「약사법」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 성분 등을 지정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해당 성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「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(고시)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.

○ 주요 제정내용

- 가. 병용금기,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등의 적용범위 규정(안 제2조)
- 나. 병용금기 성분,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, 유효성분 등 용어 정의(안제3조)
- 다. 병용금기,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지정(안 제4조, 안 제5조, 별표 1 및 별표 2)

붙임 :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(제정) 끝.

※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 → 협회업무 → 보험국 공지사항)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 병원장

사원 김영진 차장 노환우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22 (2014.01.13)

우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8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jkim@kha.or.kr